

절주 및 위안 조치

# 알콜분 1도 이상 주류에는 경고문구 반드시 표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자료 : 보건복지부>

## 1. 관련조항

- 가. 법 : 제8조 제4항
- 나. 시행령 : 제13조
- 다. 시행규칙 : 제4조, 별표 2

## 2. 경고문구의 표기

### 가. 표기대상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입품포함)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

### 나. 표기기준

#### 1) 표기방법

- 경고문구는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2) 글자의 크기 등

-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기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 글자의 크기는 상표에 사용된 활자의 크기로 하되 그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다.

- 용기의 용량이 300ml미만인 경우: 7포인트 이상
- 용기의 용량이 300ml이상인 경우: 9포인트 이상

### 3) 색상

경고문구의 색상은 상표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 4) 글자체 : 고딕체

### 5) 표기위치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 밑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 다. 행정사항

### 1) 표기기준일 등

- '95. 9월중 경고문구를 고시할 예정이며, 동 고시일부터 6개월 이후에는 경고문구가 표기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여야 하며 동 고시 이후에 6개월까지 생산·수입된 주류는 1년 후부터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별척이 적용됨.

- 이 규칙 시행전 제조·수입 또는 발주된 주류는 과음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2) 행정조치

- 과음경고문구의 표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인만큼 주류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민속주 등 국내 전통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도계획을 마련하고 법령의 취지와 필요성을 주지시켜 동 계도가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평상시 감시·감독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국민들로부터도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 표기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고발 조치

### 3) 벌칙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㉞

